

---

목회자(직원)의 사례비 및 처우에  
대한 운용지침

---

높은뜻하늘교회

제정 : 2015년 11월 01일

개정 : 2019년 01월 01일

## 제 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높은뜻 하늘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의 목회자와 직원에 대한 사례(급여)비 지급 규정과 처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있다. (그 외 파트교역자, 준전임교역자의 경우 당회에서 정한다.)

### 제2조[원칙]

이 지침은 지난 2015년 11월 01일 작성된 <높은뜻 하늘교회 「목회자 및 직원 사례비 운용지침」과 높은뜻 하늘교회 「목회자 사례비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사례 및 급여 지침을 참고하였고 시대적 변화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미비한 부분은 당회에서 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사례'(목회자)라 함은 목회자가 교회를 위하여 바르고 건전한 목회에 전념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를 말한다.
- ② '급여'(직원)라 함은 교회의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직장인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지급하는 생활비를 말한다.
- ③ '목회자'라 함은 담임목사, 부목사, 교육목사, 전임전도사를 말한다.
- ④ '직원'이라 함은 목회자 이외 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납세의 원칙]

사례와 급여를 받는 목회자(담임목사, 부목사, 전임전도사)와 직원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파트교역자, 준전임교역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2 장 사례 및 급여

### 제5조[연봉의 책정]

- ① 목회자와 직원의 사례는 연봉제를 기준으로 한다
- ② 연봉제에는 기본연봉과 복리후생비로 구성된다
- ③ 목회자와 직원의 연봉은 공개를 기본으로 한다.

#### 제6조[사례 및 급여의 수준]

- ① 최초 부임시, 목회자와 직원의 기본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봉급표에 해당하는 당해년도 월지급액을 기초로 산출한다. 단, 전임전도사(또는 교육목사)의 사례는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② 기본연봉 책정시, 담임목사는 국가공무원 5급, 부목사는 7급, 직원은 9급의 직급을 적용하고, 대응하는 호봉은 실 목회 또는 경력 기간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 ③ 매년 기본연봉은 최초 부임시 책정된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하되, 전년도 기본연봉에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교회의 재정 실정과 전망 등을 고려하여 당회에서 결정한다.
- ④ 목회자 및 직원의 연봉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기본연봉
  - 2. 복리후생비: 연금,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자녀학자금, 통신비, 차량비,
- ⑤ 목회자는 안식년(6년 근무 후 1년 이내의 범위) 기간에도 사례비를 지급하되 목회 활동비, 식비, 교통비(유류비 및 소모품비), 통신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담임 목사로서의 공적 사역에 필요한 비용과 본 교회 차기 사역 준비를 위한 비용은 계획서에 의거 당회에서 별도의 비용을 정한다.
- ⑥ 급여명세서의 내용은 별첨 1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제 3 장 목회 활동비

#### 제7조[목회활동비의 정의]

목회활동비라 함은 목회자가 목회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으로 사례비와 구분된다.

#### 제8조[목회활동비의 결정]

- ① 목회활동비의 한도는 매년 예산편성시 당회가 편성한다.
- ② 목회활동비는 연간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목회활동비의 사용원칙]

- ① 목회활동비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영수증에 의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목회자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게 한다. 다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부목사 등의 목회 활동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목회 활동비 사용은 별첨2를 기준으로 한다

## 제4장 복리후생비

### 제10조[복리후생비의 정의]

복리후생비는 목회자의 특성상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연금과 퇴직금 등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교회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1절 통신비

#### 제11조[통신비의 지원]

목회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통신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지원금액등의 범위는 실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당회가 정한다.

### 제2절 차량비

#### 제12조[목회자에 대한 차량제공 원칙]

- ① 목회자(담임목사)에게는 원칙적으로 교회 소유의 차량을 제공한다.
- ② 제①항에 의거, 제공되는 차량은 담임목사의 경우 2500cc이하 수준으로 지급한다
- ③ 차량유지비(자동차세,보험료,유류비,소모품비,세차비용,주차비,수리비 등)는 교회에서 지급하며 운전자는 이를 위해 영수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출퇴근 교통비 지원]

교회에서 목회자 및 직원의 출퇴근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당회가 정한다.

#### 제14조[목회활동을 위한 개인차량 유지비 지원]

목회자가 불가피하게 개인 소유의 차량을 목회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차량 유지비를 지원하며, 해당 비용은 교회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급한다.

- ① 목회활동에 사용된 유류비와 통행료는 전액 실비 지원하며, 해당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한다.
- ② 자동차 관련 세금 및 보험료는 교회가 50%를 지원하며, 지원금 한도는 당회가 결정한다. 단, 수리비 및 소모품비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한다.

### 제3절 식비지원

#### 제15조[식비]

- ① 목회자와 직원에게는 매월 15만원(7,500원×20일 기준)의 중식비를 지급한다.

② 그 외 초과 근무 및 행사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식비는 실비에 의해 정산한다.

#### 제4절 연금 등의 지원

##### 제16조[국민연금의 지원]

국민연금법에 정한 바와 같이 목회자 및 직원이 50%,교회가 50%를 부담한다.

##### 제17조[건강보험료의 지원]

건강보험법에 정한 바와 같이 목회자 및 직원이 50%, 교회가 50%를 부담한다.

##### 제18조[목회자연금의 지원]

목회자가 50%,교회가 50%를 부담한다. 목회자연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사적연금으로 적립할 때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목회자별 연금액은 당회에서 결정한다(총회 연금)

##### 제19조[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지원]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은 직원이 50%, 교회가 50%를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100% 교회가 부담한다.

##### 제20조[건강검진의 지원]

교회는 목회자 및 직원(배우자 포함)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 제21조[목회자에 대한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지원]

교회는 목회자에 대한 운전자보험.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를 부담한다.

##### 제22조[퇴직금]

① 교회는 1년 이상 교회에 재직한 목회자 및 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매년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퇴직금은 목회자 및 직원이 퇴직하기 직전 1년의 평균 사례비 또는 급여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한 후(1/12) 본 교회에 재직한 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②항에 불구하고 담임목사의 퇴직금은 매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적립한다.

1. 높은뜻하늘교회에 재직한 지 6년 이내인 경우 : 제②항에서 산출한 금액의 1.5배
2. 높은뜻하늘교회에 재직한 지 6년 초과 12년 이내인 경우: 제②항에서 산출한 금액

의2배

3. 높은뜻하늘교회에 재직한 지 12년초과 18년이내인 경우: 제2항에서 산출한 금액의 2.5배
  4. 높은뜻하늘교회에 재직한 지 18년 초과인 경우: 제2항에서 산출한 금액의 3배
- ④ 퇴직금의 기산은 하늘교회에 취임한 시점으로 한다.

### 제5절 기타 지원 (양육보조비, 학자금)

#### 제23조[자녀 학자금의 지원]

- ① 목회자 및 직원의 자녀에 대하여 출산월부터 만6세가 되는 달까지 매달 10만원씩 양육보조비를 지원한다.
- ②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의 고지비용을 실비 정산하되 분기 45만원(월15만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①,②조항은 선택할 수 있되 중복할 수는 없다)
- ③ 목회자 및 직원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다니는 경우 학자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개인의 선택적인 비용(기숙사비, 과외활동비, 방과 후 실습비 등)은 제외한다.  
(수업료와 기성회비는 <교회인근 학교3~4개> 학교에서 발행하는 수납고지서를 기준으로 실비 지급한다.  
단 특수학교의 경우 일반학교의 기준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 ④ 목회자 및 직원의 자녀가 대학(교)를 다니는 경우 등록금 고지액의 70%를 지원하되, 총 8학기 이내에서 학기 당 350만원을 넘지 아니한다. 다만, 첫 학기의 입학금은 전액 지원하고 외국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도 국내 대학에 준하여 지원한다.

#### 제24조[휴가비와 명절상여금]

- ① 목회자와 직원에게는 매년 1회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휴가비를 지급한다.
- ② 매년 설날과 추석에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명절상여금을 지급 한다.  
(담임목사는 20만원, 부목사는 15만원, 기타 사역자 및 직원은 10만원을 지급한다.)

### 제5장 사택의 지원

#### 제25조[지원되는 사택의 규모 등]

교회는 전임교역자가 주거 안정으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택 제공 또는 주택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 ① 교회는 담임목사에게 교회 소유의 사택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주택을 자가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주택 임차(전액 전세기준)에 소요되는 금액을 재직기간 동안

무이자로 대여하거나 은행에서 차입할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자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 ② ①항의 사택 지원비용은 교회 인근(2km 이내)의 국민주택(전용면적 85m<sup>2</sup>)아파트를 말하며, 임차시에도 사택과 같은 위치, 같은 평형의 주택 임차비를 기준으로 하고, 적용 이자율은 전년도말 교회가 주거채 은행에서 차입할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자율로 한다. 부양가족 수와 자녀의 성장에 따라 위 기준 규모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부목사. 교육목사. 전임전도사가 스스로 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교회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이자로 대여하거나 그 전액 또는 일부를 금융 기관에서 차입할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금액에 대하여 무이자로 대여하는 금액의 크기나 적용되는 이자율은 매년 당회가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26조[사택의 유지관리비 지원]

- ① 사택의 수리비와 재산세 등 건축물을 소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 필요 경비는 소유자(교회 또는 목회자)가 부담한다.
- ② 연료비, 수도료, 전기료, 관리비 등 주택의 사용 수익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하는 자가 부담한다.
- ③ 담임목사의 사택과 관련된 사항은 교회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 및 지출한다.

별첨1.

급여명세서 (2019)

급여자정보

지급년월일				성명	
호봉	급수			직위	
퇴직금 기산일				임직일	

급여 및 공제내역

급여내역	기본급		공제내역	소득세 (갑근세)	
급여내역	복리후생비	통신비	공제내역	주민세	
		자가운전지원비		건강보험료	
		교통지원금		국민연금	
		자동차관련 지원금		산재보험	
		사택지원비		고용보험	
		운전자보험,상해보험		합계	
		휴가비		자가운전지원비	
		식비	식비		
		양육보조비	양육보조비		
		교육비			
		목회자연금			
		자녀학자금			
		명절상여금			
지급총액		비과세급여		비과세합계	
		과세대상급여			
실수령액		공제총액			

높은뜻하늘교회

## 별첨 2

목회활동비에 포함되는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임시 선교구제 후원비</li><li>- 교인 심방 시 식대 및 후원, 기타 관련 비용</li><li>- 교인 및 교직원 격려차 교회 행사 또는 회식 등에 후원하는 비용</li><li>- 교계 인사나 기관에 대해 교회를 대표해 접대할 경우의 일시적 비용</li><li>- 기타 목회활동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나 항목 지급이 불분명한 경우으로써 목회활동비 지출이 맞다고 판단되는 비용</li></ul>
목회활동비에 포함되지 않을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도서구입비</li><li>- 체력단련비</li><li>- 주차비, 세차비</li><li>- 경조사비</li></ul>